

의안번호	2203172
의 퇴 인	김민전 의원
회 답 일	2024.09.11.
추계번호	24C311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5억 5,900만원 (연평균 1억 1,200만원)으로 추계

[표 1]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안 제5조 (시·도 기본계획의 수립)	510	—	—	—	—	510	102
안 제6조의2 (지원전략의 수립)	49	—	—	—	—	49	9.8
합 계	559	—	—	—	—	559	112

주: 유사 연구용역사례를 준용한 것으로 향후 실제 기본계획 및 지원전략 수립시 내용 및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경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도 기본계획의 수립)	(제1항)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도 기본계획(이하 “시·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시·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시·도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시책과제 및 중기·장기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을 위한 시·도의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시·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5.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지역 내 관계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지방 자치단체의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지방대학의 특성화에 관한 사항 8. 지역인재에 대한 채용촉진 및 지역정주에 관한 사항 9. 외국인 유학생 유치·학업·취업·정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항)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 기관과 협의를 거쳐 2개 이상 시·도를 통합하여 시·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4항) 시·도지사가 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방대학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고등교육법」 제59조의3에 따른 지역혁신대학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항)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한 시·도 기본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6항) 시·도지사는 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도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7항) 교육부장관은 시·도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시·도 기본계획의 상호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고등교육법」 제59조의 4에 따른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도지사에게 시·도 기본계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6조 (연도별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1항) 시·도지사는 시·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등을 위한 시·도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시·도지사가 시·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3에 따른 지역 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항)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도 시행계획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3	안 제6조의2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전략의 수립)	(제1항) ① 정부는 제5조에 따른 시·도 기본계획과 제6조에 따른 시·도 시행계획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이하 “지원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지원전략은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며, 「고등교육법」 제59조의4에 따른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지원전략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항) 지원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지원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 및 연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4. 시·도 기본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5.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대학과의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항) 정부는 지원전략의 수립을 위하여 지방대학,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계획이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재량규정
		(제5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전략의 내용,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4	안 제6조의3 (대학·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시행)	(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전략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도별 대학·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이하 “세부 지원전략”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2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세부 지원전략 및 지난해의 세부 지원전략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고등교육법」 제59조의4에 따른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3항)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량규정
		(제4항)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부 지원전략 수립과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항)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5	안 제17조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등)	(제1항) 교육부장관은 지역의 산업·사회와 연계하여 교육·연구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을 육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59조의4에 따른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방대학을 특성화 지방대학으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로 지정할 수 있다. (제2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항)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해당 지방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된 경우 3. 지원받은 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의무규정
		(제4항)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이 취소된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5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7에 따른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6항)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및 취소, 이의신청의 기준·절차와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	
2	안 제6조 (연도별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비용은 현행법 제6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비용과 유사한 것으로 보여 추계에서 제외함 ¹⁾
3	안 제6조의2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전략의 수립)	○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4	안 제6조의3 (대학·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	—	·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전략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도별 대학·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나, 이는 부처 내부의 유관부서에서 수립가능한 것으로 보아 추가재정소요에서 제외함 - 다만, 개정안의 취지에 맞추어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실시될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5	안 제17조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등)	×	·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특성화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등교육법」에 따른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향후 실시될 지원과 규제특례의 내용 및 소요비용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 ²⁾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추계가 곤란한 사항 등을 제외하고 본 추계에서는 ①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시·도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과 ②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의 수립(안 제6조의2)관련 비용을 추계함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지원 등을 위한 시·도기본계획(이하 "시·도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 비용'은 5년 주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비용으로 추계하며, 이외에 계획 수립 과정의 자문 및 의견수렴비용, 작업수당, 자료제작 및 홍보·인쇄비 등 제반 비용은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연구용역비는 교육부에서 발주하였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준용

1) 현행법과 개정안의 시행계획은 모두 시·도지사를 수립 주체로 규정하였고, 수립절차 또한 대학·지역동반성장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외에는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크지 않은 것으로 함. 다만, 개정안의 취지에 맞추어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실시될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2) 참고로, 교육부는 법 제17조 등에 따라 지방대학의 과감한 혁신 및 지역·대학 동반성장을 위한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23년 지정된 10개 글로벌대학(대학수 기준 14개교)을 '23년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하였음

- ‘대학·지역 동반성장지원전략(이하 “지원전략”이라 한다) 수립 비용’은 5년 주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비용을 추계하며, 이외에 계획 수립 과정의 자문 및 의견수렴비용, 작업수당, 자료제작 및 홍보·인쇄비 등 제반 비용은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연구용역비는 교육부에서 발주하였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을 위한 재정개편 및 범부처 연계·협력 방안 정책연구’의 연구용역비를 준용
-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안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비용은 교육부에서 발주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준용하며, 2026년에 5억 1,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³⁾
 - 안 제5조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며, 추계기간 중 2026년에만 관련 비용이 발생
 - 5억 1,000만원 = 3,000만원×17개 시·도

[표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내역
(단위: 백만원)

소관	수행기관	연구주제	사업연도	연구비용
교육부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2020	30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별 지방대학·지역인재 육성지원 정책연구	2015	30

3) 개정안은 시·도 단위의 기본계획이기에 중앙정부 단위의 기본계획과 예산규모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교육부 발주,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년 수행, 계약금액 48백만원)와 서울시 평생교육정책 다면적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서울특별시 발주,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20년 수행, 계약금액 169.9백만원)에서 볼 수 있듯이 시행 주체의 차이보다 연구용역의 내용에 따라 용역계약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볼 때, 개정안의 기본계획은 현행법 제5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수행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과 수행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의 수립에 소요되었던 연구용역비를 준용함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연도 \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안 제5조 (시·도 기본계획의 수립)	510	-	-	-	-	510	102

- (안 제6조의2) 지원전략 수립 비용은 교육부에서 발주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을 위한 재정개편 및 범부처 연계·협력 방안 정책연구’ 용역비를 준용하며, 2026년에 4,9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개정안의 지원전략은 ‘지원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 및 연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제3호), 시·도 기본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제4호),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제5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교육부가 2023년 발주하였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을 위한 재정개편 및 범부처 연계·협력 방안 정책연구’와 주제 및 내용 등에서 유사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본 추계에서는 동 연구용역비를 지원전략 수립비용으로 준용함
 - 안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전략은 5년마다 수립되며, 추계기간 중 2026년에만 관련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표 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연도 \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안 제6조의2 (지원전략의 수립)	49	-	-	-	-	49	9.8

- (추가재정소요) 개정안에 따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5억 5,900만원으로 추계

[표 5]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안 제5조 (시·도 기본계획의 수립)	510	—	—	—	—	510	102
안 제5조의2 (지원전략의 수립)	49	—	—	—	—	49	9.8
합 계	559	—	—	—	—	559	112

주: 유사 연구용역사례를 준용한 것으로 향후 실제 기본계획 및 지원전략 수립시 내용 및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경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유사 연구용역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값으로 실제 계획 및 전략 수립의 내용 및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경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